

한국체육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09. 20. 규칙 제6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한 인사나 단체의 명예를 길이 빛내고 예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예우대상자의 자격기준은 제6조의 각 호에 따르되, 공적 내용과 한국체육대학교에 미치는 발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추천) 예우대상자는 학장, 처장, 사무국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다.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기금기부자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 교학처장, 사무국장, 훈련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예우대상자의 예우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1억원 이상 발전기금을 직접적으로 유치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우대상자 결정) 예우대상자에 대한 예우 유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6조(예우유형 및 기준) 예우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상건립 : 100억원 이상의 금전이나 부동산을 기부 또는 기증한 자
2. 흉상건립 : 30억원 이상의 금전이나 부동산을 기부 또는 기증한 자
3. 기념관 명칭 부여 : 건물이나 그 건축비용을 기증 또는 기부하면서 자신의 아호 등을 건물의 명칭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자. 다만, 건물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부금액에 따라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4. 기념비 : 20억원 이상의 금전을 기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기증한 자
5. 부조물 : 10억원 이상의 금전을 기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기증한 자
6. 명패 : 500만원 이상의 금전을 기부한 자(기부금액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별도 규격의 명패 제작),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유치한 자

제7조(영수증 발급) 한국체육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 위원장은 기부 또는 기증자가 법령에 따라 조세 면제나 감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유증 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신탁제도에 의해 발전기금의 기부를 약속한 경우에는 약속된 금전 또는 부동산 등이 「재단법인한국체육대학교발전기금」에 귀속된 때에 예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부동산 기부금액 산정) 기부금액의 산정은 「재단법인한국체육대학교발전기금」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기금유치자에 대한 예우) 제6조제6호에 의한 1억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직접적으로 유치한 유공자에게는 명패 제작 이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적절한 포상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제604호, 2012. 9. 20)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